

제5차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TF 회의 결과보고

1. 개요

- 일시·장소 : 2026.2.9.(월) 14:00~18:00 / 위원회 대회의실
- 참석인원 : 15명(자문위원 7, 농식품부 2, 위원회 6)
- 주요내용 : 위원별 논의과제(11개) 및 농식품부 TF 참여 확정 등

2. 회의결과

- 위원별 논의 의제 확정(4개 분야, 11개 의제) ※ 위원별 의제 연구 발표

구분	의제	주요내용
소유 (3)	① 농지 세제개편 방안 (양도소득세 등)	8년자경 양도세 감면 조항 삭제, 진흥지역 농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
	② 농지법 중 농지소유 예외조항 삭제(상속·이농농지 관리)	상속·이농 등 고령화 및 세대전환에 따른 합법적 이용·임대 허용 등
	③ 농지중심의 담보제도 한계 극복 방안(비담보 중심 금융제도 설계)	농협의 농지소유 가능토록 한 농지법 개정안 발의, 개정안 연계하여 그 외 대안 도출 등
이용 (1)	④ 농지임대차 양성화 방안 (임대차제도 현실적 개편)	지역별 임대료 공개, 임대차 기간 보장, 장기임대차 유도 인센티브 제공 등
관리·보전 (7)	⑤ 지역특성 고려 농지관리 차등화 정책	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간 차등 적용,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농지이용여건 등 상이
	⑥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강화 방안(전담조직 신설 등)	(중앙) 농지관리청 신설, (지방) 농지관리위원회 기능 강화
	⑦ 진흥지역 확대 위한 근본적 수단마련(인센티브 등)	가격안정, 소득보전 등 적극적 보완장치 논의, 진흥지역 확대 및 보전과 이용 효율화 병행 가능한 관리방식 필요
	⑧ 농지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방안(진흥지역 총량관리)	농지전체 총량관리 현실적으로 어려움, 진흥지역에 한한 총량관리, 대체농지지정, 체계적 등급화
	⑨ 광역지자체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응	광역지자체 특별법에 따른 농지법 무력화 대비 필요
	⑩ 농지데이터에 입각한 농지 행정기반체계 구축(DB구축)	농지이용현황 등 종합적 파악을 위한 DB, 실질적이고 유용한 농지정보 구축 등
	⑪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따른 농지이용 제도적 기반 마련	영농형 태양광 설치 관련,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 논의중, 이에 따른 제도적 기준 정립 필요

- 차기 TF 회의부터 참여 → 농식품부 농지과장, 담당 서기관

3. 주요 논의 내용

- 농지의 공익적 성격과 식량주권의 본질적 가치를 전제로한 종합적·체계적 접근 필요
 - 농지제도 개선 논의가 단순 규제 완화나 부분적 제도 손질에 그쳐서는 안되며, 향후 농지법 개정안 도출로 이어져야 함
 - 국회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적 합리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함
- 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권한을 특별자치단체(광역통합특별법 및 지역특별법)로 대폭 이양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
 - 중앙정부 중심의 농지관리체계가 구조적으로 약화되고, 지역 개발논리에 따른 농지 보전 원칙이 후순위로 밀려날 위험성이 높아짐
 - 특히, 농지 전용과 관련한 권리가 특별자치단체로 위임될 경우, 농지법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공유
 - 농식품부의 농지관리 기본방침 수립 및 총량제 도입 계획과 관련해, 특별법(광범위한 전용, 해제 등)과 병존할 경우 제도간 충돌로 실질적 효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집중 지적

《농지제도 개편방향 및 향후계획(농식품부)》

- **기본원칙** : 농업·농촌의 구조적 변화와 AI·에너지 전환 등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과 인력·자본 유입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되, 식량안보와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공익적 기능 강화에 중점
- **개편방향**
 - ① 계획적 입지를 활용한 농지이용 범위 확대(농작업 시설설치 허용, 영농형 태양광 및 체험시설 입지 완화,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진흥지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 확대 등)
 - ② '26년 농지관리 기본방침 수립, '27년부터 농지보전총량제 도입.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흥지역 유지시 인센티브 확대와 농지관리 체계 개편 추진
 - ③ 농지 이용 중심의 유동화 촉진. 농지의 규모화·집단화를 위해 농업인 간 임대차를 활성화하고, 상속농지 관리 강화 등 공적 관리 기능을 보완, 청년농과 공동영농 지원

- 반드시 농지 위 태양광 설치는 영농형으로 한정하고, 일반형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농지 전용은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함
- 농지 활용에 앞서 국토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 등 대체 부지 활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공유
-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 경작자의 영농권 보장, 마을 간 이해 관계 충돌 등 현실적 쟁점 다수 제기됨
- 특별법 제정이 단기간 내 추진될 가능성을 감안할 때, 전면적 저지보다 농지법 체계 내에서의 대응 가능한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 필요
- 농지 보전 총량제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고, 총량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우 재정적·행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장치
- 농업진흥지역 유지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, 불가피한 농지 전용 시 대체농지 확보를 의무화 하는 방안 등 검토 과제로 제시

□ 기 타

- 농지제도 개선 TF 소관팀 변경(농어촌정책팀 → 농어업정책팀)
- 차기 회의부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, 농지TF 참관

3. 향후계획

- 제6차 농지제도 개선 TF회의 개최(2. 24.)
- 각 위원별 담당의제에 대한 연구발표 및 의견 공유 등